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3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4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여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신설).
- 무단방치 금지 및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, 보관에 대한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방치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2) 주요 내용

- 대여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 - “대여 사업자”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.
-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신설).
 -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
- 무단방치 금지 및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, 보관에 대한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신설).
 - 누구든지 도로,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
 -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·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의 근거를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안전한 이용과 단속 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